

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970
----------	------

2024년 9월 9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6월 7일, 김규남 의원 등 19명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- 상정일자 :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(2024년 9월 9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규남 의원)

1. 제안이유

- 고령 인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, 고령자에게 영양 잡힌 식사와 문화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, 서울시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설립 및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유·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9조제1항).

나. 폐교안에 있는 국유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제1항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심혁보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6월 7일 김규남 의원 등 19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1970호로 발의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동 개정조례안은 도심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○ 동 개정조례안 안 제9조제1항은 폐교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‘노인복지주택’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12조 역시 폐교 재산 내에 있는 국유재산의 활용 범위에 ‘노인복지주택’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동 조례의 상위법인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은 목적 규정¹⁾에서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사회복지시설을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(법 제2조제4호²⁾).

1) 제1조(목적)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,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이러한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³⁾은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, 「노인복지법」은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⁴⁾.

- 따라서 안 제9조 및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노인복지주택”은 관련 법령의 해석상 동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, 이를 규정한 동 조례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동 개정조례안이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, 상위법령의 재기재를 통해 법규 체계 전반에 관한 대민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문 개정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○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하위유형에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므로 기존 조례 내에서 동 개정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(행정관리담당관-8989, 2024.8.21.).⁵⁾

1.~3. (생 략)

4. “사회복지시설”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.

3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(정의) 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
가.~나. (생 략)

다. 「노인복지법」

4) 「노인복지법」

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노인주거복지시설

제32조(노인주거복지시설)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

1.~2. (생 략)

3. 노인복지주택 :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·생활지도·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33조(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5)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(행정관리담당관-8989, 2024.8.21.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

-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은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함. (이소라 의원)
- 향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폐교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음. (교육행정국장)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공공체육시설로”를 “공공체육시설, 노인복지주택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공공체육시설로”을 “공공체육시설, 노인복지주택으로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대부·매각 등)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, 문화시설, <u>공공체육시설로</u> 활용하려는 자 중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유상·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2조(국유재산에 대한 특례)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안에 있는 「국유재산법」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, 문화시설, <u>공공체육시설로</u>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,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대부·매각 등) ① ----- ----- --- <u>공공체육시설, 노인복지주택으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국유재산에 대한 특례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공체육시설, 노인복지주택으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